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1. 20 선고 2020가단5018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변 론 종결 2020. 12. 9

판 결선고 2021. 1. 20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2016. 3. 14. 체결된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D은 C에 대하여 이 법원 2012가단6061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2. 12. 18. D과 C 사이에 "C은 D에게 2013. 1. 18.까지 500만 원, 2013. 12. 31.까지 250만 원, 2014. 12. 31.까지 250만 원, 2015. 12. 31.까지 250만 원, 2016. 12. 31.까지 250만 원을 각 지급하고, 만일 1회라도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0만 원에서 그때까지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미지급 금액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나. (그은 망 E의 상속인인데, 2016. 3. 1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를 취득하게 하는 내용의 상속협의 분할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피고는 2016. 9.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상속협의분할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D은 2020. 7. 30. 원고에게 위 조정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D으로부터 양도통지를 위임받아 2020. 8. 5. 내용증명우편으로 C에게 위 조정금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은 2020. 8. 6. C에게 도달하였다,

라. 망 E은 배우자로 피고, 자녀로 C, F, G을 두었는데, C의 상속 지분은 2/9이다.

마. (그은 위 상속재산협의분할 당시 소극재산으로 오재성에 대한 조정금 채무 등 다 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 상속 지분 외에는 다른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내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D이 원고에게 채권양도를 한 것은 채권추심을 위한 소송신탁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신탁법 제6조에 금지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D으로부터 조정금 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신탁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은 이 사건 부동산 상속 지분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따라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조영진

별지